

치 료 감 호 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규 칙
일 부 개 정 령 안

1. 개정이유

치료감호소에 수용된 피치료감호자등이 중대한 범법행위 등 수용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격리하던 것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외에 담당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할 수 있도록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7510호, 2020. 10. 20. 공포, 2021. 4. 21. 시행) 및 같은 법 시행령(대통령령 제호, 2021. . . 공포, 2021. 4. 21. 시행)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,

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도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이 준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하는 등 미비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법률 개정에 따른 서식 및 규정 정비(별지 제6호서식, 제9호의2서식, 제26호서식 및 안 제41조제1항 개정)

- 1)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2020. 10. 20.)됨에 따라 ‘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’ 서식에 이를 반영함.
- 2) 「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」 개정(2018. 6. 26.)으로 과

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‘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’ 서식에 이를 반영함.

3) 「형법」이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를 형기에 전부 삽입하도록 개정(2014. 12. 30.)됨에 따라 ‘치료감호집행지휘’ 서식에 이를 반영함.

4) 「정신보건법」의 제명이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(2016. 5. 29.)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이를 반영함.

나. 가종료 취소 등 통보 규정 및 서식 마련(안 제18조의3제2항 및 별지 제16호의5서식 신설)

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서 가종료 취소 등 결정을 한 경우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관련 규정 및 서식을 마련함.

다.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마련(안 제45조 신설)

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」 등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에도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등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3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위원회는 영 제19조에 따른 가중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중료 또는 치료 위탁이 취소된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수용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다.

제41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중 “「정신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”을 “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”으로 한다.

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
2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중독자재활시설
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

령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

4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

제4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5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및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○ ○ 검 찰 청

(전화번호)

감집 제 호 년 월 일
수 신 ○ ○ ○ ○ 소장 발 신 ○ ○ 지방검찰청
검 사 ○ ○ ○ (인)

제 목 치료감호 집행지휘

아래와 같이 치료감호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, 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 17조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 치료감호의 집행을 지휘합니다.

피치료감호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(세)
	직 업	
	주거지	
	등록기준지	
죄 명		
판 결	법원	○ ○ ○ ○ 법원
	선고일	. . .
	확정일	. . .
치료감호 집행개시일	. . .	
미결구금일수	총 일 (1심 일, 2심 일, 3심 일)	
비 고	상소권포기, 재판확정	
첨 부	1. 판결문 등본 1통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피치료감호자등 보호원부

일련 번호	수용 번호	성명 (한자) [영문]	생년 월일	보호조치 사유		보호조치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 소견		비고		
				보호조치 사유	구체적 내용					
				가.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구체적 사항						
				나. 중대한 범법행위 또는 규율위반 행위를 한 경우 그 구체적 사항						
				다. 그 밖에 수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						
				보호조치 장소	보호조치 방법	보호조치 시작 시기	보호조치 해제 시기	보호조치 기간 연장		보호조치 중 치료활동, 식사, 용변 등 처우
						연장기간	기간연장에 따른 보호조치 해제 시기	기간연장 사유	기간연장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담당 의사 소견	
					[] 격리 [] 보호복 [] 억제대					

297mm×210mm[백상지 80g/㎡]

치료감호심의위원회

※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년 월 일

수 신 ○ ○ 보호관찰소장(○ ○ 교도소장)

발 신 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

직인

제 목 가종료 취소 또는 치료 위탁 취소 통보

「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라 []가종료 취소, []치료 위탁 취소된 피보호관찰자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.

피보호관찰자	성 명	
	주민등록번호	(세)
	주거지	
결정일자	. . .	
취소사유		
재범사건처리	검찰청(법원)	○ ○ ○ ○ 검찰청(○ ○ ○ ○ 법원)
	처분(선고)일	. . .
	죄 명	
	처분(선고)내용	
비 고		
첨 부	1. 결정서 등본	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치료감호종료심사신청서

처리기간

60일

(앞쪽)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 (세)
	직업	피치료감호자와의 관계
	주소	(전화번호 :)

피치료 감호자	성명	
	주민등록번호	(세)
	직업	
	주거지	
	치료감호 집행개시일	. . .

위 피치료감호자는 치료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사료되므로 위 사람에 대한 치료
감호 종료여부를 심사·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치료감호심의위원회위원장 귀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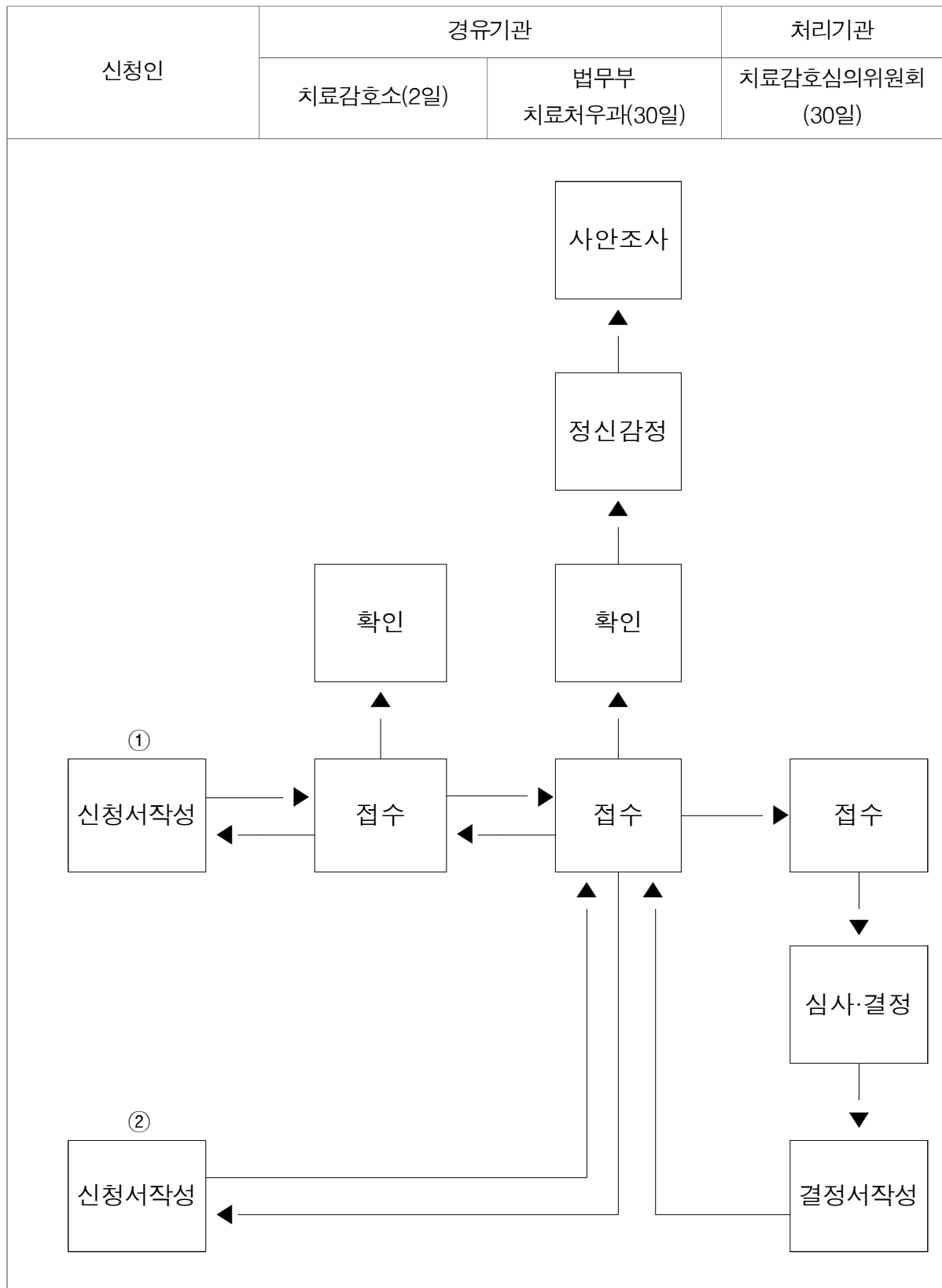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1. 치료감호판결등본 2.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등 관계 소명자료 3.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감정서
------	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이 신청서는 치료감호소나 법무부 치료처우과에 제출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(뒤쪽)

처리절차



이 유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8조의3(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 의 취소 신청 요청서 등) (생 략) <u><신 설></u>	제18조의3(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 의 취소 신청 요청서 등) ① (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 ② 위원회는 영 제19조에 따른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의 취소 결정을 한 때에는 관할 보호관 찰소의 장과 가종료 또는 치료 위탁이 취소된 피보호관찰자가 수용된 수용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6호의5서식에 따라 통보한 다.
제41조(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·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치료 기관(이하 “치료기관”이라 한 다)을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제 3호 및 제4호의 기관을 치료기 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 당 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 <u>1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3호</u> <u>에 따른 정신의료기관</u>	제41조(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1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

	<u>법률」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</u>
2. 「정신보건법」 제3조제4호에 따른 <u>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</u>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<u>중독자재활시설</u>	2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7호에 따른 <u>정신재활시설</u>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호에 따른 <u>중독자재활시설</u>
3. 「정신보건법 시행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<u>정신보건시설</u>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<u>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</u>	3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<u>정신건강증진시설</u>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그 밖에 <u>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·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·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·단체</u>
4. 「정신보건법」 제13조의2에 따른 <u>정신보건센터</u>	4.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<u>정신건강복지센터</u>
5. 알코올에 의존하거나 중독된 사람에 대한 재활프로그램 (<u>「정신보건법」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 중 실무</u>	5. ----- ----- --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

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 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・③ (생략) <u><신설></u>	<u>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</u> ----- ----- ②・③ (현행과 같음) <u>제45조(다른 법령의 준용) 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이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「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및 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</u>
--	---